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63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김성회・이기헌・백승아

윤종군 • 진선미 • 이재관

안태준 · 민병덕 · 이인영

고민정 • 서미화 • 한창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정당법」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,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.

그러나 영국·미국·일본·프랑스·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,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의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).

참고사항

법률 제 호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단서 중 "「정당법」 제22조(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)"를 "「정당법」 제22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개인(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)"을 "개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조(후원회의 회원) ①누구든지	제8조(후원회의 회원) ①		
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			
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			
다. 다만, 제31조(기부의 제한)			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			
할 수 없는 자와 <u>「정당법」</u>	「정당법」		
제22조(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)	제22조제2항		
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			
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			
아니하다.	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
제22조(기탁금의 기탁) ① 기탁금	제22조(기탁금의 기탁) ①		
을 기탁하고자 하는 <u>개인(당원</u>	<u>개인</u> -		
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			
학교 교원을 포함한다)은 각급			
선거관리위원회(읍•면•동선			
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)에			
기탁하여야 한다.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